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장 규 원*

국 | 문 | 요 | 약

현행법규나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할 의무’만을 부과하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떠한 위해가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신변보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범죄신고자의 신원노출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실질적 신변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보복범죄에 대한 재피해방지를 위한 증인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2009년 시범적으로, 그리고 2010년부터는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증인의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실제진실의 발견을 꾀하기 위한 토대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글은 새롭게 시행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국의 증인보호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증인보호, 증인보호제도, 신변보호, 증인, 피해자보호, 증거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I. 머리말

공판정에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 즉 법원에 대하여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고, 선서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며, 선서능력이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마저 부정된다.

증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증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증인보호는 범죄피해자보호와 그 궤를 같이한다. 범죄피해자는 가장 유력한 증인이며, 보복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곧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는 성폭력이나 조직범죄 피해자, 뇌물사건 고발자 등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이나 보호시설에서 지내도록 하고, 법정 등에 출석할 때에도 경찰관 등이 신변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로써 범죄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1999.8.31. 법률 제5997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9호)은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의 범죄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¹⁾ 또한 형사소송법도 피해자 법정진술권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 비디오 등의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인신변보호제도를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보좌인제도, 범죄신고자 등의 구조금제도와 같이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신원 노출의 위험이 크고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²⁾

1)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를 비롯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그 친족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인적 사항 기재의 생략(제7조, 제8조), 증인소환 및 신문 특례인정(제11조), 신변안전조치(제13조), 이사·전직 등으로 인한 비용 및 생활비·위자료 지급(제14조), 범인의 신상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제1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 글은 증인보호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를 개관하고,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범죄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외국의 증인보호제도

1.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미국에서 증인보호의 문제는 1970년대부터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1970년 연방법무부에서 시행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주로 조직범죄와 관련된 증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서 사법기관, 특히 기소에 협력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보호에 기여하였다.³⁾

증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을 제정하였고,⁴⁾ 한편 1984년에는 ‘포괄적 범죄규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에 ‘범죄피해자지원법’(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상 및 원조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비롯하여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조직범죄에 의한 보복으로부터 증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호는 ‘조직범죄규

2) 박광민·강석구·이성대,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제도의 강화방안 (대검찰청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피해자학회, 2008, 72쪽.

3) 미국의 증인보호제도에 관해서는 특히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을 비롯하여 김상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제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송기오·강경래,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이경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증인보호방안”, 형사정책 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등을 참조하였다.

4) 이 법은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를 인정하고, 특히 판결전조사보고서에 ‘피해자 영향조사’에 관한 항목을 도입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 등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제법'(Organized Crime Control Act of 1970)에 규정하고 있다. 즉 조직범죄규제법 제5장 제501조부터 제504조는 증인보호 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 WSP)을 규정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증인은 조직범죄에 관한 해당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연방정부의 보호하에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⁵⁾

미국의 증인보호는 크게 경제적 원조,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 특별피해자보호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피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원조는 일정한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피해보상 프로그램'과 증인에 대해 여비, 숙박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증인수당',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법집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압수재산의 반환'이 있다.

둘째,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보호는 피해자와 증인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형사절차의 일정에 대한 통지, 특정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피해자통지와 유죄답변, 양형심리, 가석방심사 등에서 피해자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특정 형사절차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소송절차에의 참여, 피해자에게 옴부즈맨을 선임하고 일부의 피해자에게 비공개절차에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을 동반할 수 있도록 피해자·증인원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증인에게 원조나 후원을 하는 '피해자·증인원조'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피해자보호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의료서비스와 보상의 제공 규정을 두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정폭력의 피난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노인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증인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형사절차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1) 피보호자의 이주와 신원, 직업,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5) 미국의 범죄피해자 및 증인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병인·신의기·김광준·강석구·윤해성·최웅렬·허경미·송봉규,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15-227쪽;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43쪽 이하 참조.

6) 정진수,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정진수,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형사정책연구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1996 참조.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 있다(수정헌법 제5조 참조). 증인의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⁷⁾ ‘증인면책법’(The Witness Immunity Act, 1970; 18 U.S.C 6001-6005)에 의해, 형사면책을 받은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해야 하며, 거부한 때에는 범정부범죄로 처벌한다.

(2) 연방헌법은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수정헌법 제6조 참조), 피해자와 증인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네브래스카와 위스콘신 주와 같은 일부 주는 피해자와 증인에게 피고인과 같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지연된 형사절차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인식하자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권리보장의 효력이나 강제성은 의문시되지만, 피해자나 증인도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고통의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요소에 대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인의 매수, 증인에 대한 협박, 사법방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인의 범위와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위해로부터 포괄적인 보호를 위하여, 증인의 범죄와 위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의 주된 입법목적도 보호대상 등의 확대에 있다.⁸⁾ 이러한 위해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은 증인과의 대화 및 접촉금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경호의 제공 등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증인보호와 함께 ‘형사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7) 형사면책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 근거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증언의 대가로 증언과 관련된 증인의 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제하거나 증인 그 자체를 또는 증인으로부터의 파생증거까지를 증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최병각, “조직범죄수사의 협조자에 대한 양형과 형사면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참조).

8) 에컨대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에서는 증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자,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자, 범죄신고자, 소환장을 받은 자 등으로 보호대상을 확장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증인을 구두로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증인에 대한 위해행위로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M.B. Norman, The Unabomber Strikes Again: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or Conflicts with the Copyright Act of 1976,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81 No.6,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Law Center, 2008, pp.1281-1340).

개인적인 조언이나 후원을 하는 입법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원조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 등에게 상담, 후원을 제공하거나 기타 서비스 제공 또는 피해자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 공판 및 대배심절차에서의 증인의 출두시 후견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의 주에서는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자문관을 임명하여, 형사사법절차 및 피해자와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⁹⁾ 또한 대부분의 주는 증인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감수하여야 할 부담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증인의 증언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있으며,¹⁰⁾ 일부 주는 피해자와 증인이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그 직업을 보호해주고 있다.¹¹⁾

2. 독일의 증인보호제도

독일에서 증인보호의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조직범죄대책의 하나로써 범죄수익탈환 제도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여 형사소송법 및 각종 특별 형사입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피해자보호법(OpferSchG 1986), 조직범죄대책법(OrgKG 1992), 증인보호법(ZSchG, 1998), 증인보호조화법(ZSHG 2001)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¹²⁾

- 9)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피해자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책임자로서 주검찰관을 임명하며, 그 검찰관은 피해자에게 범제도하에서 그들의 권리를 통지하고, 피해자 등을 협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경제구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군 단위별로 ‘증인자문관’을 임명하여,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 출석 등을 도와주고, 소송지연 등의 사유를 피해자 및 증인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는 검사 측 증인에 대해 도덕적 지원을 하는 법규정을 제정하였다.
- 10) 이에 따라 네바다와 뉴햄프셔 주에서는 각각 증언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증인의 증언료를 선정함에 있어 임금을 받는 증인이 범정에 출석하는 기간 동안 증인의 고용인이 증인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을 일일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출석일수만큼 지불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11) 하와이는 피고용인이 소환에 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한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였고, 해고된 피고용인에게 상실임금과 복직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12)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참조.

실질적인 증인보호는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경찰에 의한 증인보호제도인 ‘함부르크 모델’은 증인보호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 이후 1998년 증인보호법의 제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 사법기관도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송기록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공개로 증인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 증인보호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⁴⁾

(1) 아동증인이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범죄, 조직범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증인은 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는 개정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증인에게 인정한 한계의 내용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받아들인 것이다(독일 형사소송법 제68조b). 또한 독일형사소송법은 1987년 개정을 통해 제406조f 제3항을 설치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피해자인 증인의 신문이 신문자의 재량으로 증인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석자는 법정에서의 증언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증인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와 형사절차상 가해질 수 있는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때에는 변호사인 보좌인과는 별개로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형사소송법상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은 대체로 문서에 조서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디오 기술을 공판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조서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대체하고 있다. 예컨대 새로 제정된 증인보호법(ZSchG)에 의해 독일형사소송법 제247조a 및 제168조e의 규정을 증인이 법정의 방청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퇴정이나 신문의 비공개

13)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서 ‘함부르크 모델’은 예컨대 담당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증인 및 가족과의 상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개인적 차원의 보호제공(주거지, 일상생활에서의 경호나 순찰 등), 직장알선 및 이사, 주거제공, 직접적인 개인보호(예컨대 법정에서의 경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증인보호처분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청객 통제, 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호송에 의한 증인의 법정호송 등도 포함하고 있다.

14)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山名京子, “證人の保護”, 법학논집 제14호,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신이철, 형사증거법에서의 공범자 진술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안경옥,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참조.

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증인의 법정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고 증언은 동시에 비디오 화면이나 스피커를 통하여 공판정에서의 생중계를 규정하였다. 이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조직범죄와 같은 증인이나 성추행을 당한 범죄피해자인 증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은 법원에 의한 그리고 검사에 의한 신문뿐 아니라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도 적용되고, 또한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증인이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에 머무는 경우 내지 국내에 머무르거나 증언으로 인해 생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신문이 가능하다. 예컨대 조직범죄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위협 받고 있는 경우, 증인이 질병 중에 있거나 병약하거나 기타의 제거할 수 없는 장애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디오나 녹음기를 사용하여, 증언을 녹화·녹음할 수 있다. 이러한 증인신문 방식은 수사단계의 참고인 조사에도 활용된다.

(3) 독일에서는 일정한 약물범죄(마취법 제31조), 자금세탁죄(독일형법 제261조 10항), 테러단체의 조직죄(독일형법 제129조a), 기타 이와 관련범죄에 한정하여 공범증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에 제정한 증인보호조화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제4조), 임시위장신원(Vorübergehende Tarnidentität)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제5조). 증인보호조화법은 증인 당사자 및 증인보호기관(Zeugenschutzdienststellen), 공공기관(Öffentliche Stellen)뿐만 아니라 증인보호에 관련된 비공직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증인보호에 관련된 자는 증인보호 종료시점 이후에도 증인보호조치에 대하여 그가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일본의 증인보호제도

일본도 다른 나라와 같이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증인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로 폭력단으로 지정되는 조직범죄 문제와 이들의 단속을 위해 조직원의 검거, 신상파악과 자금원의 색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치인들과의 연계방지, 위장업체의 색출, 총기단속, 증인보호활동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조직범죄의 문제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증인보호의 문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⁵⁾ 그러나 최근 일본도 증인에 대한 보복 등 증인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의 증인보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 일본의 증인보호제도에 있어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은 우리와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증인보호를 위해 법률에 명시된 원칙규정이나 판례를 통하여 증인보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의무를 선언한 것은 없으나, 특별법이나 수사기관 등의 행정규칙에 간접적으로 증인 등을 보호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형법 제105조의2의 ‘증인 등 위박(威迫)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증인에 대하여 증언방해를 위하여 폭력행위를 가할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① 증인에 대한 보복의 우려 등으로 증인이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 등의 퇴정 하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304조의2), ②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고 증인 등의 주거, 근무지 등의 장소가 특정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충분한 공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심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제295조 제2항), ③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 등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299조의2), ④ 증인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법정에서 보좌인을 둘 수 있고(제157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과 방청인이 지켜보는 것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경우 그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증인과 피고인 또는 방청인과의 사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상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차폐조치를 할 수 있다(제157조의3). 또한 조직범죄, 성범죄나 아동범죄의 피해자, 기타 민감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이런 증인에 대하여는 법정 외의 별실에 재석시켜 법정에서 있는 판사 또는 소송관계인은 비디오 모니터에 비치는

15) 宮澤浩一・國松孝次, 犯罪被害者對策の現状, 東京法令出版, 2000, 284.

16)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송기오・강경래, 앞의 보고서, 2006.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신문을 행하는 소위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제 157조의4) 등을 통해 증인보호를 꾀하고 있다.¹⁷⁾

(2) 일본형법 ‘증인 등 위박죄(威迫罪)’는 협박죄 등의 가중처벌에 지나지 않고 사후적 대처방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증인보호규정은 법정에서의 신원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증인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인보호 장치이다.¹⁸⁾ 보다 구체적인 신변안전조치나 인센티브 등 증인원조의 내용은 ‘증인 등의 피해에 대한 급부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등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폭력조직인 ‘폭력단’의 구성원은 공동피고인의 1인이기 때문에 증인피해 급부법상 증인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일본은 폭력단체대책법 제28조에 이탈희망자, 즉 폭력단에서 이탈할 의지를 가지는 자에 대한 원조제도를 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¹⁹⁾

Ⅲ.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검토

실질적인 범죄신고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 범죄신고자보호법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⁰⁾ ① 수사기관(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법정대리인, 친족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를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은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 등 신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17) 자세한 내용은 송기오·강경래, 앞의 보고서, 2006, 141-150쪽 참조.

18)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63쪽.

19) 조병인 외, 앞의 보고서, 2007, 227-233쪽 참조.

20)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병인 외, 앞의 보고서, 204-209쪽 참조.

③ 범죄자신고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범죄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⑥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복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범죄신고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신고자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범죄자신고자보호법은 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범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④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신변보호의 범위가 강력범죄나 중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범죄자신고자보호법에서 말하는 ‘범죄신고’는 제2조 제1항의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보복범죄로 인한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증인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한정하고 태도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라고 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보복 등의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동료나 가족 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

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보호를 위하여 보복범죄에 대해 철저히 검거·처벌함과 함께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제도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증인 등의 실질적인 보호’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질적 진실의 발견을 꾀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제2조 제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신고의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와 증인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 효과적인 증인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하겠다. 이에 대해서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금지(제5조), 인적 사항 기재 생략(제7조), 인적 사항 공개금지(제8조) 등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으로 해소하고, 범죄신고자보호법은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²¹⁾

(2) 범죄신고자보호법은 보좌인을 통해 범죄신고자의 보호를 꾀하도록 하였다(제6조). 보좌인을 통해 범죄신고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범죄신고자를 대신하여 보좌인이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증인의 신원노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보좌인제도의 의의를 새길 수 있다. 다만 이는 보좌인으로 지정된 자가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자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신고자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제1항). 또한 범죄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① 학교·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② 법률구조법 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③ 범죄신고자 등의 고용주, ④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좌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이 경우는 당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오히려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범죄신고자 등의 경우는 가족에게조차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증인보호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규정은 냉정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범죄신고자가 위협이나 보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자신고법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21)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34-35쪽.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은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 카드’에 등재한다(제3항). 범죄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그러나 범죄신고자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신고자의 신원관리카드 열람에 대해 공개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같은 조 제2항은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②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③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의 규정(제14조)에 의한 구조금지급에 관한 심의 등의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검사의 허가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붙이고는 있지만, 검사가 열람을 허가했다고 해서 이를 징계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신원관리카드 열람권이 있다(제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신원이 노출되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열람요청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의신청권이 있고(제5항),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6항).

검사의 열람허가권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열람요청권은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Ⅳ.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성폭력·조직폭력범죄 피해자, 뇌물 사건 증인, 내부 고발자 등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증인은 검찰이 마련한 안전가옥 또는 보호시설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나갈 때는 경찰관 등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자나 증인이 신변 보호 차원에서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거처 10여 곳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와 증인의 주소를 옮겨주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해 주는 한편 직업을 알선해주고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²²⁾

이렇듯 법무부는 범죄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2009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비롯하여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제기된 논의 중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은 증인보호와도 관련된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절차내에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피해자변호인제도는 의미가 없다. 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해자변호인은 고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다른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 없다. 이는 어떤 절차에서도 피해자변호인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 권한을 열거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²³⁾ 증인신문시 피해자변호인의 임무는 피해자의 2차 피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 즉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재판의 공개를 제한

22) 동아일보 2008년 9월 5일.

23) 오경식,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피해자학회, 2007, 188쪽 이하 참조.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피고인의 보석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증인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보석 및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²⁴⁾ 이러한 규정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피고인이 증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1982년 미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보석제도와 관련하여 명백한 증거에 의한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보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석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²⁵⁾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구속은 법정 내에서 증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을 위한 조치도 인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0조 참조). 여기에서 피고인의 신체구속이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속박, 즉 공판정의 심리 도중 증인 등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비록 단서의 형식에 의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구속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무죄추정권 및 신체의 자유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증인의 권리 보호라는 양면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인 등에 대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복 우려가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석방의 제한을 통하여 증인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석방전 피의자·보복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범죄심리테스트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심리적 상황에 따른 석방여부

24) 이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김상길, 앞의 논문, 2008, 31쪽.

결정, 석방전·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보복범죄 등 재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3)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은 법정에서 진술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보복범죄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새로운 신원을 창출하여 현재의 삶의 자취를 세탁할 필요도 있다.²⁶⁾ 미국과 독일에서 행해지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핵심은 ‘신분 또는 동일성의 변경(새로운 신원의 창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⁷⁾ 미국의 경우도 새로운 신원창출을 허용하고 있고(18 USC 3521(b)(1)(A)), 독일의 경우도 본래의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신원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증인보호조화법 제5조). 우리의 경우 또한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을 하므로 새로운 신원창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형사절차 및 형사절차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신원을 말소하고 새로운 신원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해자와 관련한 변동내역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 때에 충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범죄자의 보복으로부터 범죄피해자·증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신변보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주지의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신변보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²⁸⁾

증인 중 증언가치가 가장 높은 범죄조직 이탈자의 진술·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재사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은 증인이면서도 범죄의 죄책을 지는 범죄자라는 이중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은 신변보호와 동시에 감시도 병행시키는 보안처분 성격의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26) 헐리웃 영화 ‘이레이저’(Eraser, 1996)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새로운 신원창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27) 안경옥, 앞의 논문, 1999, 332쪽; 안성수, “형사절차상 진술증거에 대한연구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7쪽.

28) 박광민·강석구·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77쪽 이하 참조.

참고문헌

- 김상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제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광민·강석구·이성대,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제도의 강화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08.
- 박미숙, “참고인의 출석·진술강제와 수사상 증인신문청구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 송기오·강경래,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신이철, 형사증거법에서의 공범자진술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안경옥,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 안경옥, “형사절차상 아동증인의 보호”, 법학논집 제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안성수, 형사절차상 진술증거에 대한연구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오경식,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피해자학회, 2007.
- 이경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증인보호방안”, 형사정책 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이보령, “형사절차상 증인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과 범죄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정주택,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입법조사월보 제134권, 1983.
- 정진수,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형사정책연구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정진수,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조병인 · 신의기 · 김광준 · 강석구 · 윤해성 · 최응렬 · 허경미 · 송봉규,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최병각, “조직범죄수사의 협력자에 대한 양형과 형사면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1996.
- 황태정, 증인보호 관련 법규 정비 및 통일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宮澤浩一 · 國松孝次, 犯罪被害者對策の現状, 東京法令出版, 2000.
- 山名京子, “證人の保護”, 법학논집 제14호,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 椎橋隆幸, 日本における犯罪被害者保護の最近の動向, 법학연구 제22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Allum, F. and Fyfe, N., *Developments in State Witness Protection Programmes: The Italian Experience i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Policing Oxford, Vol.2 No.1, Oxford Journals, 2008.
- Arnold, R., *Witness Protection under Swiss legislation: An Offspring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7 No.2-3,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7.
- Cohen, A., *Witness Protection: Where flying objects are concerned, the courts have long shielded team owners from liability*, Athletic Business, Vol.32 No.8, Athletic Business Publications Inc, 2008.
- Forshaw, M., *Witness: The impact of a recent court judgment on witness protection schemes*, Policing Today, Vol.13 No.3, Professional, Managerial and Healthcare Publications Ltd, 2007.
- Norman, M .B., *The Unabomber Strikes Again: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or Conflicts with the Copyright Act of 1976*,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81 No.6,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Law Center, 2008.

Consideration of the Program for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Chang, Gyu-Won^{*}

The laws & regulations or institutions in force can be said to be remiss in offering an atmosphere of freely telling the truth to a witness while imposing only the obligation to tell the truth only to a witness in a criminal procedure.

Therefore, it is understandable that a witness cannot but feel uneasiness about what harm would be done to not only a witness him/herself but also his/her family for a considerable period after bearing witness of the proper case in a law court.

In spite of going through the revision of “Protection Laws on Specific Crime” Reporter, etc. (Law No.5997, Aug.31, 1999) twice which is a basic law for police protection of a crime victim & witness after its establishment, the scope of protection coverage in this law is more limited than that of other nations, and on top of that, there follows a problem that the proper law fails to cope aggressively with the danger of a crime reporter's identity exposure, nor is its subsequent substantial safety measure on a person not equipped.

The Ministry of Law,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from recurring damage incurred by a retaliation crime, is now preparing a foundation for not only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through which it is also attempting to find out the facts of a case by putting the program for a witness protection in force as an example in 2009 and expanding & putting this program in force from the year 2010.

This writing, in relation with the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program newly scheduled to be in force, aims at taking a look at the predicted points at issue in time of full execution of this system by comparing & considering the police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WonKwang University, Ph.D. in Law

protection of a witness in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ing a plan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rogram for the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for the time to come.

❖ Keywords :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System for Police Protection of a Witness, Protection of a Person, a Witness, Protection of a Victim, Evidence